

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13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1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악취방지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5년 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이 조례에 의한 공개대상에 동 악취방지법 위반자를 추가하여 형평을 기하고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골자

- 가. 조례의 제명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(안 제명).
- 나. 공개대상 업소에 악취방지법 위반 업소를 추가함 (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).

개정조례안 : 별첨

신·구조문대비표 : 별첨

관계법령발췌서 : 별첨

- 악취방지법 제8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의 제명 “안산시 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”를 “안산시 환경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“대기 및 수질 환경 보전법규”를 “환경관련법규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제3호중 “제1호 또는 제2호”를 “제1호 내지 제3호”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고,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특례) 「악취방지법」 부칙 제4조 (「대기환경보전법」의 개정에 따른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)의 규정에 따라 종전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3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(고발 포함한다)을 받는 자도 이 조례에 의한 공개 대상으로 한다.

소관 실과		환경위생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환경위생과장 박 강 호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대기2담당 김 학 응
	담당자 성명·전화	김 학 응 (행정 2895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안산시대기및수질환경보전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</u>	<u>안산시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</u>
<p>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</u>를 위반한 업소의 명칭과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,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<u>환경관련법규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조 (공개의 대상) ① 시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소가 <u>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규</u>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다.</p> <p>② 공개 대상이 되는 업종 및 업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2.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</p> <p>3. <u>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중 허가(신고)를 받지(하지) 아니한 업소</u></p>	<p>제2조 (공개의 대상) ① -----</p> <p>----- <u>환경관련법규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악취방지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</p> <p>4. <u>제1호 내지 제3호</u></p> <p>-----</p>